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74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김재원 · 김성원 · 박정현
김기현 · 강경숙 · 오세희
이해민 · 강준현 · 김한규
황 희 · 최기상 · 한정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제지업체의 가격 담합이 밝혀지는 등 출판콘텐츠 제작원가 부담의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영상·웹툰콘텐츠 등의 산업과 달리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인문·학술 분야 등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

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되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참고서 등 일부 출판콘텐츠는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9(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출판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출판콘텐츠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 순수문학·인문·학술 서적 등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출판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판콘텐츠의 제작비용은 제1항에 따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3. 수험서,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4.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출판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행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 제72조제2항,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9(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출판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u> <u>1. 공제대상 출판콘텐츠</u>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

판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출

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

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 순수문

학·인문·학술 서적 등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

은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출판콘텐츠의 경우 그 제

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

판콘텐츠의 제작비용은 제1항

에 따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다.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

른 정기간행물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3. 수험서,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4.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출판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

제25조의8, 제25조의9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⑪ (생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

제25조의8, 제25조의9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② ~ ④ (생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함)

제25조의8, 제
25조의9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_____

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

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

4. (현행과 같음)

[illegible]

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u>제25조의8</u>,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③·④ (생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제25조의8, 제25조의9</u>----- ----- ----- ----- ----- -----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illegible]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illegible]

②

제25조의

9까지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략)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